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3-1955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3-27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9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5

고양시 고시
제2023-272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 70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27고양시 고시
제2023-2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9

고양시공직자윤리
위원회 고시
제2023-3호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32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3-193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251호] 사업 공사완료 공고 35

고양시 공고
제2023-1958호

도시계획시설(대로3-39호선 외 1개소) 사업 공사완료 공고 37

고양시 공고
제2023-19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2호선(1단계)] 사업 공사완료 공고 39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업지역에서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용도의 건축물로 인해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 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을 개정하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토지분할제한면적, 용도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경사도 및 평균입목축적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 나.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제한 면적을 규정함(안 제23조).
- 다. 학교시설보호지구와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개정함(안 제47조, 제52조 및 제53조).

라. 공용시설보호지구와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마. 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4조 및 제55조).

바. 상업지역 안에서 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준주택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61조 및 별표 24).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계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팀(031-8075-3075)

- 팩 스 : 031-8075-493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협의한 금액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산지가 포함된”을 “산지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녹지지역안에서”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제29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

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정시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 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정시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의3 중 “영 제84조의2제2항”을 “영 제8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용도지역안”을 “용도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업지역안”을 “상업지역 안”으로, “공동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5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 수련시설

별표 9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 판매소 및 영 별표 10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가목, 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영 별 표 11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4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별표 17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 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 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8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 수리시설을 제외한다) 및 더목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것

별표 2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 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건축심의 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행위 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도시계획정책관
입안자	과장 성명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팀장 성명	도시계획팀장 김교철
	담당자 성명·전화	성상기 031-8075-3075

[별표 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제61조제2항 관련)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	350% 이하	260% 이하
70 이상 ~ 80 미만	370% 이하	290% 이하
60 이상 ~ 70 미만	400% 이하	32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440% 이하	36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490% 이하	41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550% 이하	470% 이하
20 이상 ~ 30 미만	620% 이하	530% 이하
20 미만	700% 이하	600% 이하

※ 비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는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다.
2.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용 비율을 90% 이상 건축
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350% 이하, 근린상업지역에서는
26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생략) 1.~2. (생략)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략) 1.~3. (생략) 4.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u>산지</u>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별표 29 ②~④ (생략)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u>녹지</u> 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u>200제곱미터</u> 이상으로 한다. <신설> <신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4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u>조례로 정하는 금액</u>” 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협의한 금액을 말한다. ④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산지</u>에 해당하는----- ②~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 -----<u>녹지</u> 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u>다음</u> 각 호와 같다. 1. <u>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u> 2. <u>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u>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생 략)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
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하
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
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
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의 묘지관련시설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
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
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
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
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
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
의 용도로 쓰는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u>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u>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u>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u>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삭 제>
--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삭 제>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	--

<u>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u>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u>요양병원</u>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삭 제>
---	---

[illegible]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략)

1.~22. (생략)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⑦ (생략)

제64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times (\text{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이 경우에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생략)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1.~22. (현행과 같음)

② -----상업지역 안-----「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

③~⑦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생 략) 1.~12. (생 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17. (생 략)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현행과 같음) 1.~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4.~17. (현행과 같음)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생 략) 1.~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중 자연권수련시설 4.~6. (생 략) (비고 생략)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 수련시설 4.~6.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9] <u>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u> (생 략) 1.~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4.~7. (생 략) (비고 생략)	[별표 9] <u>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u>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 판매소 및 영 별표 10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7.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10] <u>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u> (생 략)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 3.~8. (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 나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0.~13. (생 략) (비고 생략)	[별표 10] <u>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u>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가목, 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3.~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 및 영 별표 11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0.~13.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14] <u>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u> (생 략) 1.~9. (생 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13. (생 략)	[별표 14] <u>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u>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13. (현행과 같음)
[별표 17] <u>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u> (생 략) 1.~8. (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14. (생 략)	[별표 17] <u>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u>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0.~14.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생 략)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3~7. (생 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16. (생 략)	[별표 18] <u>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u>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u>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 수리시설을 제외한다) 및 더목을 제외한다</u> 3~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9~16. (현행과 같음)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 관련) (생 략) 1~3. (생 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 (양식장을 포함한다) 5~6. (생 략)	[별표 21] <u>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 관련)</u>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u>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u> 5~6. (현행과 같음)

[별표 24]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61조제2항 관련)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이상 ~ 90 미만	<u>450% 이하</u>	<u>350% 이하</u>
70이상 ~ 80 미만	<u>510% 이하</u>	<u>400% 이하</u>
60이상 ~ 70 미만	<u>570% 이하</u>	<u>450% 이하</u>
50이상 ~ 60 미만	<u>630% 이하</u>	<u>500% 이하</u>
40이상 ~ 50 미만	<u>690% 이하</u>	<u>550% 이하</u>
30이상 ~ 40 미만	<u>750% 이하</u>	<u>600% 이하</u>
20이상 ~ 30 미만	<u>820% 이하</u>	<u>650% 이하</u>
20 미만	<u>900% 이하</u>	<u>700% 이하</u>

[별표 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제61조제2항 관련)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	<u>350% 이하</u>	<u>260% 이하</u>
70 이상 ~ 80 미만	<u>370% 이하</u>	<u>290% 이하</u>
60 이상 ~ 70 미만	<u>400% 이하</u>	<u>320% 이하</u>
50 이상 ~ 60 미만	<u>440% 이하</u>	<u>360% 이하</u>
40 이상 ~ 50 미만	<u>490% 이하</u>	<u>410% 이하</u>
30 이상 ~ 40 미만	<u>550% 이하</u>	<u>470% 이하</u>
20 이상 ~ 30 미만	<u>620% 이하</u>	<u>530% 이하</u>
20 미만	<u>700% 이하</u>	<u>600% 이하</u>

※ 비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는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다.
2.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용 비율을 90% 이상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350% 이하, 근린상업지역에서는 26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9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68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9호) 사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683-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명칭 : 오금동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생시설 신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결 정	9	주차장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683-1번지	940.4㎡	
시 행	9	주차장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683-1번지	940.4㎡	

- 건축규모

구 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규 모	비 고
금회시행	940.4㎡	555.12㎡	1,496.71㎡	지하 1층, 지상 2층	

※ 건축 허가사항 반영[허가번호: 2022-건축과-신축허가-25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로 1*0, 61*동 10*호
- 성명 : 강 * 철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
소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목
동일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일련 번호	위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주 소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덕양구 오금동	683-1	주차장	940.4	940.4	강*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로 1*0, 61*동 1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70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12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70호) 사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12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명칭 : 고양동 주차빌딩 신축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결 정	70	주차장 (노외)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55-2번지	559㎡	경고제2006-5092호 (2006.6.20.)
시 행	70	주차장 (노외)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125번지	551.3㎡	

- 건축규모

구 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규 모	비 고
금회시행	551.3㎡	282.76㎡	1,095.53㎡	지하 1층, 지상 4층	

※ 건축 허가사항 반영[허가번호: 2022-건축과-신축허가-30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7, 2*동 80*호
- 성명 : 고 * 호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3.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
소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목
동일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일련 번호	위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주 소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덕양구 고양동	1125	주차장	551.3	551.3	고*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 로 6*7, 2*동 80*호				

고양시 고시 제2023 - 2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방도363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 7. 25.

고 양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 연장 (km)	비고
기정	지방도	363	화전~탄현	565,106	향동동278	설문동1114	용두, 성사, 설문동 등	23.9	
변경	지방도	363	화전~탄현	563,203 [감]1,903]	향동동278	설문동1114	용두, 성사, 성석, 설문동 등	23.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개설완료 된 지방도363호선에 대하여 추가 확장계획이 없는 사유지 제척

3.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시행자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 세목조서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고양시청 도로정책과(고양시청 제2별관 1층, ☎ 031-8075-2856)

■ 토지 세목조서(제척 필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유자		그 밖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기정	변경	증감					
계	총 29 필지			32,969	2,050	147	-1,903					
1	일산동구 성석동	1256-1	주	1,457	50	0	-50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13동 803호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2단지)	이○○			
2	일산동구 성석동	1246-61	도	25	3	0	-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382-23(장항동)	방○○ 외2인			
3	일산동구 성석동	1246-42	잡	999	35	0	-35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21 큰마울현대아파트 117-304	이○○			
4	일산동구 성석동	990-23	장	152	143	0	-143	서울시 은평구 진관3로 15-45, 1015동 511호 (진관동, 은평뉴타운 구파발)	조○○			
5	일산동구 성석동	984-102	도	3	3	0	-3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336 청구아파트 101-5	한○○ 외34인			
6	일산동구 성석동	984-88	대	756	247	0	-247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34-1	한○○			
7	일산동구 성석동	984-103	대	496	321	0	-321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84-103	조○○			
8	일산동구 성석동	984-74	임	350	350	124	-226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992	김○○			
9	일산동구 성석동	969-1	전	9	9	0	-9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1127	임○○			
10	일산동구 성석동	545-1	임	7,669	21	0	-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서울아파트2-902	김○○			
11	일산동구 성석동	537-15	대	1,869	63	0	-63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218번길 7(마두동)	조○○ 외1인			
12	일산동구 성석동	523-49	대	827	134	0	-134	서울용산구용문동38-126	정○○ 외1인			
13	일산동구 성석동	523-50	잡	1,413	89	0	-8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삼부아파트8-71	장○○ 외1인			
14	일산동구 성석동	523-47	잡	992	105	0	-105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62번길 33,에이동401호(문봉동, 힐링하우 스)	동○○			
15	일산동구 성석동	529-2	대	234	22	0	-22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73-55	박○○			
16	일산동구 문봉동	53-7	대	310	1	0	-1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52	이○○			
17	일산동구 문봉동	53-25	대	170	4	0	-4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52	이○○			
18	일산동구 문봉동	53-8	대	634	3	0	-3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401-1(문봉동)	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유자		그 밖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기정	변경	증감					
19	일산동구 문봉동	47-3	전	359	14	0	-14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47	이○○			
20	일산동구 문봉동	159-5	답	1,467	3	0	-3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79, 314동 1404호 (식사동, 위시티일산블루밍3단지)	이○○			
21	일산동구 문봉동	82-12	전	5	5	0	-5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52	이○○			
22	일산동구 문봉동	82	잡	2,388	76	0	-76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52	이○○			
23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93	임	8,198	31	21	-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14동 103호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2단지)	전주○○ 충충			
24	일산동구 사리현동	466-10	대	809	94	0	-9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12동 1405호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2단지)	최○○			
25	일산동구 사리현동	465-2	대	528	116	0	-116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141번길 54-24(산남동)	김○○			
26	일산동구 사리현동	659-30	도	102	30	0	-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37(사리현동)	사단법인 ○○○○ 우리선교회			
27	일산동구 사리현동	659-5	도	204	65	0	-6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34 잠미마을 805동 202호	이○○			
28	일산동구 사리현동	114-8	대	536	5	0	-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16	김○○			
29	덕양구 원당동	626-3	도	8	8	2	-6	파주시 경의로 1114, 4층 405호 코삼공오피스 (야당동, 에펠타워)	주식회사 ○○○○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제2023-3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른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에 따른 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121	경호원	41210	경호원
		4122	청원경찰	41220	청원경찰
		4123	시설 및 특수 경비원	41231	시설 경비원
				41232	호송 경비원
				41233	기계 경비원
				41234	특수 경비원
				41239	그 외 시설 및 특수 경비원
		4129	기타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41291	보안 관제원
				41292	유통 및 매장 감시원
				41293	주차 단속원
				41299	그 외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211	돌봄 서비스 종사원	42111	요양 보호사
				42112	간병인
				42113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4212	보육 및 교사 보조 서비스 종사원	42121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42122	교사 교육 보조원
		4219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42191	산후조리 종사원
				42192	치료사 보조원
				42199	그 외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4421	바텐더	44210	바텐더
		4422	웨이터	44221	음식 서비스 종사원
				44222	음료 서비스 종사원
				44223	주류 서비스 종사원
		4429	기타 음식 서비스 종사원	44290	그 외 음식 서비스 종사원
612	원에 및 조경 종사자	6121	원에작물 재배원	61211	육묘작물 재배원
				61212	화훼작물 재배원
		6122	조경원	61220	조경원
873	자동차 운전원	8731	택시 운전원	87310	택시 운전원
		8732	버스 운전원	87321	시내버스 운전원
				87322	시외 및 고속 버스 운전원
				87323	관광버스 운전원
				87329	그 외 버스 운전원
		8733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87331	경·소형 화물차 운전원
				87332	중형 화물차 운전원
				87333	대형 화물차 운전원
				87339	그 외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8739	기타 자동차 운전원	87391	승용차 및 승합차 운전원
				87392	렌터카 운전원

				87393	대리 운전원
				87394	대리 주차원
				87399	그 외 자동차 운전원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10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100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2	광업 단순 종사원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2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2	배달원	9221	우편집배원	92210	우편집배원
		9222	택배원	92221	택배원
				92229	그 외 택배원
		9223	음식 배달원	92230	음식 배달원
		9229	기타 배달원	92291	음료 배달원
				92292	신문 배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30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3001	수동 포장원
				93002	수동 상표 부착원
				93003	제품 단순 선별원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11	청소원	94111	건물 청소원
				94112	운송장비 청소원
				94119	그 외 청소원
		941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4122	거리 미화원
				94123	재활용품 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421	건물 관리원	94211	아파트 경비원
				94212	건물 경비원
				94219	그 외 건물 관리원
		9422	검표원	94220	검표원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11	가사 도우미	95110	가사 도우미
		9512	육아 도우미	95120	육아 도우미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21	패스트푸드 준비원	95210	패스트푸드 준비원
		9522	주방 보조원	95220	주방 보조원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531	주유원	95310	주유원
		9539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5391	매장 정리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9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10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99101	농업 단순 종사원
				99102	임업 단순 종사원
				99103	어업 단순 종사원
				99104	산불 감시원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9921	계기 점검원 및 가스 점검원	99211	계기 점검원
				99212	가스 점검원
		9922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3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99231	주차 관리원
				99232	주차 안내원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991	구두 미화원	99910	구두 미화원
		9992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9991	환경 감시원
				99992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251호] 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양시 고시 제2022-34호(2022. 2. 11.), 제2022-251(2022. 7. 22.)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498-1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251호]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498-1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251호] 사업
- 명 칭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251	노외주차장	대장동 498-18 일원	265	고고제301호 (13.10.11)	노외주차장
금회시행	251	노외주차장	대장동 498-18 일원	264		

- 건축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규 모	비 고
264㎡	167.9㎡	167.9㎡	63.6% / 63.6%	지상 1층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로 1** (홍은동)
- 성 명 : 이 * 정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수일 : 2022. 2. 11.
- 준공일 : 2022. 11. 24.

6. 관계도면 : “계재생략”

도시계획시설(대로3-39호선 외 1개소) 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양시 고시 제2023-210호(2023. 6. 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09-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대로3-39호선 외 1개소)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09-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대로3-39호선 외 1개소)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결정 조서

명 칭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능	시 점	종 점
결정	대로	3	39	26.25 ~27.5	1,321 (62)	국지도로	대로2-1 정발산동 1355	대로1-10 식사동 833-10
금회 시행	대로	3	39	26.25 ~27.5	62 (62)	국지도로	풍동 609-5	풍동 616-12
결정	중로	2	152	15	187 (62)	국지도로	대로3-39 풍동 609-5	소로1-237 풍동 616-5
금회 시행	중로	2	152	15	62 (62)	국지도로	풍동 609-5	풍동 616-12

※ ()는 대로3-39호선과 중로2-152호선 중복구간임.

- 사업의 규모

구 분	결정면적 (㎡)	금회시행면적 (㎡)	비 고 (최초결정일)
대로3-39호선	54,661.9	2,498 (817)	고고제2004-142호 (2004.11.17.)
중로2-152호선	2,789	817 (817)	고양시고시 제2008-172호 (2008.10.31.)

※ ()는 대로3-39호선과 중로2-152호선 중복구간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종로2가)
- 성명 :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대표 김인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수일 : 2020. 6. 5.
- 준공일 : 2022. 12. 26.

6. 관계도면 : “계재생략”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2호선(1단계)] 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양시 고시 제2023-211호(2023. 6. 20.)로 실시계획(변경)고시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16-1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중로2-152호선)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16-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중로2-152호선)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결정 조서

명 칭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능	시 점	종 점
결정	중로	2	152	15	187	국지도로	대로3-39 풍동 609-5	소로1-237 풍동 616-5
금회 시행	중로	2	152	15	120	국지도로	풍동 609-5	소로1-237 풍동 616-5
시행 예정	중로	2	152	15	67	국지도로	대로3-39 풍동 609-5	풍동 616-12

- 사업의 규모

구 분	결정면적 (㎡)	금회시행면적 (㎡)	비 고 (최초결정일)
중로2-152호선	1,774	1,774	고양시고시 제2008-172호 (2008. 10. 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중로 69(중로2가)
- 성명: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대표 김인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수일 : 2020. 3. 6.
- 준공일 : 2022. 12. 26.

6. 관계도면 : “계재생략”